「 법인파트너 월복리적금 특약 」

준법감시인 심사필번호 제2016-약관-351 호

제1조 약관의 적용

법인파트너월복리적금(구 외환은행)(이하 "이 적금"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'예금거래기본약관' 및 '적립식예금약관'을 적용합니다.

제2조(가입대상)

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법인으로 합니다.

② 제1항의 법인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합니다.

제3조 가입금액

이 적금의 월부금은 최저 1,000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가 있습니다.

제4조 적립유형 및 저축방법

이 적금은 자유적립식으로 월별로 계좌당 합산하여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금액과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가입기간 3/4 경과 후에는 적립잔액의 1/2를 초과하여 수납할 수 없습니다.

제5조 가입기간

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며 연 단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.

제6조 일부해지 및 만기갱신

이 적금의 일부해지 및 만기갱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.

제7조 적용금리

① 이 적금의 금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금리에 제②항에서 정한 가입우대금리와 실적우대금리를 더하여 적용합니다.

② 아래의 거래가 있는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급합니다.

1. 가입우대금리

본 예금의 가입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당 0.1%의 우대금리를 가산합니다.

가. 월별 적립 누계액을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C/C로 자동이체를 신청 및 등록한 고객

나. 당행 신용등급 5(+)등급 이상의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인 고객

2. 실적우대금리

만기해지시 아래의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각 목당 0.1%의 우대금리를 가산합니다.

가. 만기 전전월말부터 과거 6개월간 법인명의(동일 사업자번호 기준) 하나카드 결제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

나. 이 적금의 만기일 기준 전전월말부터 과거 6개월간 당행 수출입실적이 1백만 불 이상인 경우

다. 이 적금의 만기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을 20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

③ 제②항의 만기해지시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.

제 8 조 이자지급

① 만기해지이자는 만기해지시 가입일 당시 가입기간별 영업점에 게시한 금리에 제 7 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월복리로 적용합니다. 다만, 중도해지시에는 각 월부금의 경과기간별로 차등적용하며 단리로 적용합니다.

② 중도해지이자는 월부금에 총운용일적수와 소정의 중도해지금리를 곱하고 평년, 윤년에 불구하고 365 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
③ 만기일 이후 지급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원금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서 게시한 만기후금리(단리계산)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.

④ 중도해지금리와 만기후금리는 일반정기적금의 해당 금리와 동일하며 단리를 적용합니다.